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국방부조사본부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방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방부조사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군방첩사령부 개편 계획에 따라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수행하는 안보범죄의 수사 기능을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하고자 함.

한편, 정보, 보안 및 수사 기능의 분리에 따른 제도적 보완 필요성과 기능 확대에 따른 통제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임.

이에 따라, 안보범죄의 수사를 임무에 추가하고, 군 방첩정보기관 및 군사보안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군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업 기반을 제도화하려는 것임.

또한, 감찰실장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보하도록 규정하여 감찰 기능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.

이를 통해 수사 기능 이관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고 권한 확대에 대한 통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, 군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안보범죄에 관한 수사 임무 규정(안 제1조)

국군방첩사령부가 수행하던 안보범죄에 관한 수사 기능을 이관받아

수행하기 위하여 부대의 임무에 안보범죄의 수사를 추가함.

나. 군 안보수사협의체 구성 근거 규정(안 제1조)

군 정보기관 등과의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축하도록 하여 정보, 수사, 보안 기능 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, 정보기능과 수사기능 등 분리에 따른 우려를 해소함.

다. 방첩부대원의 직무 범위 외 행위에 대한 조사 근거 규정(안 제1조)

방첩부대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정보활동 행위에 대해 자체 식별 및 각 부대와 개인이 신고·제보로 접수된 사항에 대해 준법감찰위원회 심의 결과를 근거로 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방첩부대원의 직무 범위 미준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함.

라. 감찰실장의 신분 및 임무 규정(안 제2조)

감찰실장의 신분과 임무를 명시하고, 감찰기능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국방부조사본부령 일부개정령안

국방부조사본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방첩부대의 직무범위 외 행위(각 부대와 개인이 신고·제보로 접수된 경우를 포함한다)에 대한 조사

② 각 군 군사경찰 업무 중 국방부조사본부는 본조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「형법」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, 「군형법」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, 「군형법」 제80조 및 제81조의 죄와 「국가보안법」, 「군사기밀보호법」, 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(「국가보안법」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만 해당된다)에 규정된 죄의 수사 및 예방과 범죄정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

③ 국방부조사본부는 본조 제2항 각 호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방방첩본부 및 국방보안지원단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계가 필요한 경우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축하고, 관계기관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본부장 및 차장”을 “본부장, 참모장 및 감찰실장”으로 하고, “차장”을 “참모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차장”을 “참모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감찰실장은 2급 이상 군무원,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.

⑤ 감찰실장은 국방부조사본부 소속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.

1. 감사·검열 및 직무감찰
2. 비위사항의 조사·처리
3. 민원 및 진정사건의 처리

⑥ 국방부장관은 감찰실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사원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설치와 임무)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 하에 국방부조사본부를 둔다. 1. ~ 10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	제1조(설치와 임무) ① 1. ~ 10. (현행과 같음) <u>11. 방첩부대의 직무범위 외 행위(각 부대와 개인이 신속·제보로 접수된 경우를 포함한다)에 대한 조사</u> <u>② 각 군 군사경찰 업무 중 국방부조사본부는 본조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「형법」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, 「군형법」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, 「군형법」 제80조 및 제81조의 죄와 「국가보안법」, 「군사기밀보호법」, 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(「국가보안법」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만 해당된다)에 규정된 죄의 수사 및</u>

<신 설>

제2조(본부장 등) ①국방부조사본부에 본부장 및 차장 각 1인을 두되, 본부장은 장성급(將星級) 장교로, 차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.

<신 설>

② (생략)

③ 차장은 본부장을 보좌하며,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<신 설>

예방과 범죄정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

③ 국방부조사본부는 본조 제2항 각 호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방방첩본부 및 국방보안지원단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계가 필요한 경우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축하고, 관계기관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.

제2조(본부장 등) ①-----
--- 본부장, 참모장 및 감찰실장 -----
-----, 참모장-----
-----.

② 감찰실장은 2급 이상 군무원,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.

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
④ 참모장은 본부장을 보좌하며,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⑤ 감찰실장은 국방부조사본부 소속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다

<신 설>

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.

1. 감사·검열 및 직무감찰

2. 비위사항의 조사·처리

3. 민원 및 진정사건의 처리

⑥ 국방부장관은 감찰실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사원 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	
연 락 처	(02) 748 - 6575